의안 번호	79

대한민국 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촉구 결의안

(김인애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대한민국 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촉구 결의안

(김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9

발의연월일 : 2026. 9. 28.

발 의 의 원 : 김인애·감규상·김원일·문순규·박강우·박영주 배명갑·백승규·이우완·이정희·정순욱·정은미 하경석·홍용채 의원 (12명)

찬 성 의 원 : 류성국·진형익 의원 (2명)

1. 제안 이유

○ 미국은 이란에 대한 군사 공습을 감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되었음. 이는 유엔헌장의 무력행사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임

○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국군의 임무를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로 한정하고 있음. 또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해역에 군함 및 전력을 보내는 것은 참전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음

○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적 대응이 아닌 외교적 노력을 우선해야 함. 이에 대한민국 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제안함

2. 주요 내용

○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가 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불가를 선언할 것을 촉구함

3. 건 의 문: 붙임

4. 수 신 처 :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국무총리실(의전비서관),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 경상남도지사

대한민국 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촉구 결의안

미국의 이란 공습은 유엔헌장의 무력행사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 희생이 발생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는 불법 침략전쟁으로 발생한 것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해소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인 대한민국에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군사작전에 대한 파병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2항은 국군의 임무를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로 명시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한국군 파병은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을 위배한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과 전력을 보내는 것은 단순한 '항로 보호'가 아니며 국제사회가 참전으로 간주할 위험이 크다. 국제 인도법상 교전국에 원조를 제공하거나 자국의 자산이 전쟁 수행에 이용되는 경우, 이는 군사행동에 동참한 것으로 규정된다.

파병할 경우 우리 장병뿐 아니라 중동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과 진출 기업, 우리 국적 선박이 보복과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병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익이 될 수 없다.

정부는 국제법상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따라 군사력 투입이 아닌 외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하나. 창원시의회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창원시의회는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반대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호르무즈 해협 및 중동 분쟁 지역에 대한 파병 불가를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법상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따라 군사력 투입이 아닌 외교적 방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10월 1일

창 원 시 의 회